

2019년도 제2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25.(월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19-25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09건(안건번호 제2019-154150호~15535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154150호~154157호 밴드에서 소설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은 불법복제물의 제공을 요청하는 부분(본문)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소설(파일)을 실제로 전송한 부분(댓글)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50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66회 저작권보호 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5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4쪽에 복제·전송자가 게시한 글 일부가 기재되어 있음. 복제·전송자가 특정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 A 위원 : 복제·전송자가 흔히 쓰는 문구로 보임.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의견임.
- B 위원 : 동의함. 해당 부분은 공개해도 문제 소지가 없어 보임.
- C 위원 : 비식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19-154150호~155358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2,509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4150호~154157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밴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19-154150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제공을 요청하는 부분(본문)과 불법복제물을 실제로 전송한 부분(댓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54150호~15415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댓글에서 소설 파일을 실제로 전송한 부분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임. 본문에서 불법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함.
참고로 지난 6월 개최한 전체심의위원회에서 불법복제물을 요청한 자 및 댓글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해 준 자에게 시정권고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B 위원 : 불법복제물의 제공을 요청하는 본문과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댓글 모두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시정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심의대상 게시물

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불법복제물등의 전송과 무관한 온라인 상의 표현이 위축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4150호~15415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4158호~155358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음악 'Love poem (가수: 아이유)'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음원을 들려주면서)안전번호 제2019-154158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18. 발매된 최신 곡으로 앨범 'Love poem'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의 실연자인 아이유가 작사를 하였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앨범 'Love poem'에 수록된 약 6곡의 음원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안전의 모니터링 날짜는 앨범 발매일 다음 날인 2019. 11. 19.임.

(음악 '샤넬 (Feat. 박봄) (가수: MC몽)'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음원을 들려주면서)안전번호 제2019-154182호의 음원파일은 2019. 10. 25. 발매된 최신 곡으로 앨범 'CHANNEL 8'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의 실연자인 MC몽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함.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최신 가요 약 100곡의 음원을 이용할 수 있음.

(음악 '엄마아리랑 (가수: 송가인)'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음원을 들려주면서)안전번호 제2019-154192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4. 발매된 최신 곡으로 앨범 '송가인, 1st ALBUM '佳人''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앨범 '송가인, 1st ALBUM '佳人''의 수록곡 약 21개의 음원을 이용할 수 있음.

(출판 '도굴왕 (출판: 뉴에피소드,카카오페이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

면서)안건번호 제2019-154363호는 밴드 '○○○'에서 어문저작물을 텍스트 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합법 저작물은 한 화 당 약 100원에 구매할 수 있음. 참고로 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244명임. 누구나 해당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게시물을 볼 수 있음.

(방송 '청일전자 미쓰리(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4486호는 16부작 드라마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tvN 채널에서 2019. 9. 25.부터 2019. 11. 14.까지 방영된 최신 저작물임.

(게임 '기어스 5'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4876호는 2019. 9. 10. 출시된 최신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약 1,8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정품은 약 29,950원에 판매 중임. 배급사는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임.

(영화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5183호는 2019. 9. 25.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19. 10. 21.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밴드명은 '☆☆☆☆☆☆☆☆☆☆'로 불법복제물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54158호~15535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모두 테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며,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C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만화, 출판, 영상물, 프로그램, 게임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단되어 가결 의견임.

- B 위원 : 상기 게시물들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4158호~155358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4150호~15535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3.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2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2.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